

의안번호	2219010
의 퇴 인	이훈기의원
회 답 일	2026. 7. 3.
추계번호	26B265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6(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호조치의 이행과 해킹 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 지원,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,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1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의6(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하여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 지원,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,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중소·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체계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체계 운영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한 중소·영세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체계 운영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2026
해킹·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 (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체계 운영)	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중소·영세기업 대상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복구 지원, 보안컨설팅 등 맞춤형 보안강화 서비스 제공 등 - 중소·영세기업 피해복구·서버원격점검, 중소·영세기업 침해사고 조치기술지원 등 *기술지원건수: ('23) 1,970건→('24) 2,002건→('25) 2,041건	5,59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 지원,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,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,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지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